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 오기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03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특별시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비율 상향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오기형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5. 2. 7.
3. 회부연월일 : 2025. 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도는 2007년 강남북간 재정격차 확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처음 시행되었음. 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치구간 세입격차가 최대 15배 가량에서 6배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있었음.

그런데 이 제도 시행 후 15년 이상 지난 현재, 강남북간 재정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음. 2022년 기준 각 자치구의 재산세수를 보면 강남구의 경우 8,354억 원, 도봉구의 경우 321억 원으로 약 26배의 격차를 보임.

이에 재산세의 특별시분 재산세의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강남북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특별시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비율 상향

현행은 특별시 관할구역의 재산세에 대해 특별시와 구(區)가 공동으로 과세하고 있고, 그 배분비율은 특별시분과 구(區)분을 각각 50:50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특별시분에 대한 편입비율을 상향하여 특별시분과 구분을 각각 60:40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생략) ¹⁾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u>100분의 50</u> 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② ----- ----- ----- ----- ----- -- <u>100분의 60과 100분의 40</u>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특별시 관할구역 내 재산세 배분비율의 의의

서울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는 세수 격차로 인한 특별시 자치구 간의 심각한 재정불균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제도로서, 그 이전에 재산세는 특별시세가 아닌 구세였는데 강남개발효과로 강남·북간의 재정격차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90년대부터 세목교환 논의를 거쳐 현재의 재산세에 대한 공동세제가 도입되었음.

[재산세 공동과세 추진경과]

- 구세인 종토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안(정부입법안, 1995.11.2) 무산
- 김근태의원(1996.12.6.), 이상수의원(2001.11.28.) 세목교환안을 발의하였으나 폐기
- 재산세 공동과세안 발의(김충환의원 2005.12.5.) → “공동과세” 결정(2007.7.)

현행법은 「지방세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²⁾에 따

1)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 가. 취득세
- 나. 레저세
- 다. 담배소비세
- 라. 지방소비세
- 마. 주민세
- 바. 지방소득세
- 사. 자동차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기본법」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① 특별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地方稅收)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라 특별시 재산세수의 50% 특별시분으로 징수하여 이를 25개의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음. 그 결과 2023년 결산 기준으로 공동재산세 반영 전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세입격차는 25.8배이나, 반영 후에는 5.4배로 축소되어 자치구간 균형적인 재원배분에 상당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강남구와 강북구의 공동재산세 효과 비교(2023년 결산기준)]

(단위: 억원)

구 명	재산세 징수액	공동재산세 조정			자치구간 세입격차	
		자치구 재산세(50%)	특별시분 재산세(50%)	조정 후 자치구 세입	당초	조정후
강남구	7,591	3,796	672	4,468	25.8배	5.4배
강북구	294	147	672	819		

자료: 행정안전부

(2) 검토의견

개정안에 따라 자치구에 배분하는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0분의 60으로 인상하는 경우 자치구에 균등 배분되는 규모가 증가하게 되므로, 자치구 간 재산세입 격차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강북구와 강남구의 재산세입 격차를 비교해 보면, 2023년 결산 기준, 현행법(50:50)에 의하면 강남구의 재산세입은 강북

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산세는 해당 구의 재산세 세입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

제4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구의 5.5배이나, 개정안(60:40)에 의하면 4.2배로 축소되어 그 격차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재산세수의 특별시분 편입비율 변경에 따른 효과 비교]

연도	강북구(기준)		강남구		배분후 격차(시세:구세)	
	세입액	격차(배)	세입액	격차(배)	50:50(현행)	60:40(개정안)
2023년(결산)	294	1.0	7,592	25.8	5.5	4.2
2024년(예산)	283	1.0	7,420	26.3	5.4	4.1
2025년(예산)	298	1.0	8,004	26.9	5.5	4.2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이 사안은 자치구 내에서 재원 배분비율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자치구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는 특별시분 편입비율 상향에 찬성³⁾하고, 9개 자치구는 반대⁴⁾하고 있으며, 서울 본청은 자치구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① 찬성하는 자치구는 2008년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한 이후 15년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자치구별 격차가 존재하고, 최근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그 격차가 악화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완화 조치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② 반대하는 자치구는 특별시분 편입비율 상향은 일부 자치구 주민에 대한 행정 역차별이 될 수 있고, 지방자치 발

3)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4) 종로, 중구, 용산, 마포,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전을 저해하므로, 특별시분 편입비율 상향보다는 시·구세 세목 교환이나 국세 이양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현재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2⁵⁾에서 조정교부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시분 재산세 편입비율 상향이 조정교부액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만약, 특별시분 재산세 편입비율이 상향될 경우 최종 재산세 수입이 증가하는 자치구는 조정교부액이 감소하고, 최종 재산세 수입이 감소하는 자치구는 조정교부액이 증가하게 될 것임. 그러므로, 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변경을 통한 재정형평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별시분 재산세의 균등 배분을 통한 1차적인 세수격차 완화만을 고려하는 것을 넘어서 일반조정교부금이 배분된 이후의 최종

5)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군에 균등 배분한다.

1.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구(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적인 재원배분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⁶⁾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동 개정안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변화를 수반하므로, 서울시 관할 25개 자치구 간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 및 자치구의 자주재원 확충,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완화 등 지방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3

6) 한국지방재정학회,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2024. 11.